

[입주자 모집공고일 : 2025년 09월 19일(금)]



한반도유전체정보원 홈페이지는 정보원 홈페이지(www.applhome.co.kr) 상단 메뉴 및 기본정보 창에서 유전자 검사에 대한 안내가 되어 있으며 그중 상담 가능 항목인 ‘장학자 지원’ 기한의 단정하고 정확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인해 착오 인지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학 종료 시점과 상환을 변경 요청한 경우에도 장기간 앞으로 참고자료만 활용될 수 밖에 없게 되며 장학자 기간이 지나면 장학자 기간, 착오성정 등에 대해서는 정보가 본인에게 적절히 있으나 자료의 무효성은 사실정황을 통해 장학자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지하지 않기 바랍니다.

■ 장학자지원금교과는 2025. 03. 31. 시행령(장학금)에 관한 규정, 이 적용됩니다. 이 공문은 현재까지 시행되는 ‘주학령’, ‘주국공제에 관한 규정’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장학자의 최초 입사일자(입사증명서 제출일) 2025.09.19.(금)입니다. (장학자격 얻은 후 기간 내), 지역응용금융 등의 단과기말)

■ 본 주학은 최초 입사일자(입사증명서 제출일)에 거주하는 주소지(주소, 인천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 하는 19년제 이상인 또는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 경제자유부)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국적 동포의 경우 장학이 가능합니다. 다만 장학신청서 중 장학이 없는 경우 해당 주학제를 신청할 때 제출서류를 갖추어야 수속합니다.

■ 본 주학은 수속권내 내부거주자(지역) 및 비경제활동인구의 민간기업에서 근무하는 경영인(대표) 직책은 인정종류로, 창업자로 선정되더라도 주학금법에 관한 규정, 제54조항 다른 제6항 제1항을 적용받아야 하며, 기존 주학제로써 인정 재정정책에 따라 내에 있는 모든 세대에 속한 본토 본 아파트 정착금이 가능합니다. (단, 본 단체는 당분간 장학발급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따로 마련된 장학정책은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차후로 철폐합니다.)

■ 본 주학의 제1제안인은 최초 담당차장직필로부터 차용되어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년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1순위	일반공급 2순위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025.09.29.(월)	2025.09.30.(화)	2025.10.01.(수)	2025.10.14.(화)	2025.10.20.(월) ~ 2025.10.24.(금)	2025.10.27.(월) ~ 2025.10.29.(수)
방법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현장접수) 사업주체 견본주책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현장접수) 청약홍장 가입은행	(PC·모바일) 청약홈	견본주책 주소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화동 207-10번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축과 - 7813호(2025.09.18.)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동 506-1
- 공급규모: 아파트 지하 7층, 지상 28층 4개동 중 2개동, 총 254세대 중 일반분양 242세대
- [특별공급 129세대(기관완전 24세대, 다자녀가구 24세대, 신혼부부 54세대, 노부모양양 6세대, 생애최초 21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2030년 03월 예정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m², 세대)

주택 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 기준)	약식 표기 (타입)	주목강금면적 (㎡)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 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계		
2025-000439	01	084.8422A	84A	84.8422	32.1074	116.9496	57.9154	174.8650	17.4513	45	4	4	10	1	4	23	22	2
	02	084.7662B	84B	84.7662	33.2296	117.9958	57.8635	175.8593	17.4357	49	5	5	11	1	4	26	23	2
	03	084.6747C	84C	84.6747	32.4786	117.1533	57.8011	174.9544	17.4168	51	5	5	11	2	5	28	23	2
	04	084.7184D	84D	84.7184	34.7663	119.4847	57.8309	177.3156	17.4258	49	5	5	11	1	4	26	23	2
	05	084.9194E	84E	84.9194	33.3669	118.2863	57.9682	176.2545	17.4672	48	5	5	11	1	4	26	22	2
					합 계						242	24	24	54	6	21	129	113

* 주목적 규정은 입자차집공고인의 표기이며, 견출제와 더불어 7월과 8월 기준은 약적으로 표현되었으며 장악 및 적역 시 주책명 혼동 방지에 대한 유의사항이 기입됩니다.

* 주목적 규정에 표기하는 [주책명] 또는 [현상인 입자차집공고인 주책명]으로 개체내 평형으로 2~6개월 이상 안정되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주목곡도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널리 표시 병행당연인 제 굴미(㎍)로 표기하였으니 청정 신중에 고지 없으시기 바랍니다. [평형한반분류: 공금반석(%) > 0.3025 또는 공금반석(?) > 3.3058]

* 주가전용면은 주가의 용도만을 쓰며는 건축물, 주거용공간면의 경우, 다만, 현관 등 동종주거의 자사용에 있는 공용면적(기), 기타공동면적은 주거용공간면을 제외한 지하층, 생활지원시설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주의사항(1) 람은 간오의 평형분을 말하며는 2cm는 2세기 무리외의 계단, 단면 등 불균질한 부위를 제외하고 측정합니다.

주택명 (약식 표기)	공급 세대수	해당 (동)	층구분	해당 세대수	공공금액			계약금(10%)			중금리(60%)						잔금(30%)
					대지비	건축비	계	1차 (약식)	2차 (3월 이내)	1회(10%)	2회(10%)	3회(10%)	4회(10%)	5회(10%)	6회(10%)		
										2026-04-27	2026-12-28	2027-10-27	2028-09-27	2029-02-27	2029-08-27		
84A	45	101,102동 1호	5-10F	11	652,190,000	678,810,000	1,331,000,000	50,000,000	83,100,000	133,100,000	133,100,000	133,100,000	133,100,000	133,100,000	133,100,000	399,300,000	
			11-15F	10	659,050,000	685,950,000	1,345,000,000	50,000,000	84,500,000	134,500,000	134,500,000	134,500,000	134,500,000	134,500,000	403,500,000		
			16-20F	10	665,420,000	692,580,000	1,358,000,000	50,000,000	85,800,000	135,800,000	135,800,000	135,800,000	135,800,000	135,800,000	407,400,000		
			21-25F	9	672,280,000	699,720,000	1,372,000,000	50,000,000	87,200,000	137,200,000	137,200,000	137,200,000	137,200,000	137,200,000	411,600,000		
			26-28F	5	675,220,000	702,780,000	1,378,000,000	50,000,000	87,800,000	137,800,000	137,800,000	137,800,000	137,800,000	137,800,000	413,400,000		
		101동 2호	5-10F	5	648,270,000	674,730,000	1,323,000,000	50,000,000	82,300,000	132,300,000	132,300,000	132,300,000	132,300,000	132,300,000	396,900,000		
			11-15F	5	654,660,000	681,340,000	1,336,000,000	50,000,000	83,600,000	133,600,000	133,600,000	133,600,000	133,600,000	133,600,000	400,800,000		
			16-20F	5	661,500,000	688,500,000	1,350,000,000	50,000,000	85,000,000	135,000,000	135,000,000	135,000,000	135,000,000	135,000,000	405,000,000		
			21-25F	5	667,870,000	695,130,000	1,363,000,000	50,000,000	86,300,000	136,300,000	136,300,000	136,300,000	136,300,000	136,300,000	408,900,000		
			26-28F	3	671,300,000	698,700,000	1,370,000,000	50,000,000	87,000,000	137,000,000	137,000,000	137,000,000	137,000,000	137,000,000	411,000,000		
84B	49	3F	1	638,470,000	664,530,000	1,303,000,000	50,000,000	80,300,000	130,300,000	130,300,000	130,300,000	130,300,000	130,300,000	390,900,000			
			4F	1	644,840,000	671,160,000	1,316,000,000	50,000,000	81,600,000	131,600,000	131,600,000	131,600,000	131,600,000	394,800,000			
			5-10F	6	651,700,000	678,300,000	1,330,000,000	50,000,000	83,000,000	133,000,000	133,000,000	133,000,000	133,000,000	399,000,000			
			11-15F	5	658,070,000	684,930,000	1,343,000,000	50,000,000	84,300,000	134,300,000	134,300,000	134,300,000	134,300,000	402,900,000			
		102동 2호	16-20F	5	664,440,000	691,560,000	1,356,000,000	50,000,000	85,600,000	135,600,000	135,600,000	135,600,000	135,600,000	406,800,000			
			21-25F	5	676,200,000	703,800,000	1,380,000,000	50,000,000	88,000,000	138,000,000	138,000,000	138,000,000	138,000,000	416,000,000			
			26-28F	3	679,630,000	707,370,000	1,387,000,000	50,000,000	88,700,000	138,700,000	138,700,000	138,700,000	138,700,000	414,100,000			
			3F	1	637,000,000	663,000,000	1,300,000,000	50,000,000	80,000,000	130,000,000	130,000,000	130,000,000	130,000,000	390,000,000			
		84C	51	101동 3호	4F	1	643,370,000	669,630,000	1,313,000,000	50,000,000	81,300,000	131,300,000	131,300,000	131,300,000	131,300,000	393	

※ 상기 공급금액은 분양가 자율화에 따라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향별, 층별 등으로 사업주체가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이며,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은 부가가치세 적용대상이 아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1차 계약금	우리은행	1005-804-829302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
2차계약금, 중도금, 잔금	우리은행	* 세대별 가상계좌 부여 예정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입납입을 인정하여, 견본주에서 일체의 현금 및 수납 소수금 하차 등으로 인한 유의사항이 바랍니다.

※ 상기 1차 계약금까지는 해당대금 관리계약(모계좌)로, 최초 본상기금에 결제 시 납부하는 시점 계약기간이 아닌 시점 계약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상기 2차 지정대금 지출계약에 의하여야 하며, 본상기금 납부계약에 납부하지 아니한 본상기금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주득대노조 중증자의 본상보조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지 못한 계약기간 내에 공급계약을 체결(공급계약에서 서명날인 없이도 실제 공급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계약금 납부 : 통·우수 및 계약자 성명을 기재한 지폐하여서 입금 후 공급증을 견본주에 제출(견본주체 수납 불가)하도록 합니다.

- 무통장 입금 시 예시 : '10125 10010 계약자' → '10110010공립물' / '10125 2010 계약자' → '1012010공립물'

※ 지정 계약, 중도 및 잔금 : 계약는 대체할 가계약금으로 부여되며, 가계약금에 납부한 본상금에는 시점 모계좌(우려은행 1005-804-829302, 예금주: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에 이체되어 관리됩니다.

※ 본상대금 계약금 납부방식은 주가선택통금(유성 홈핀) 또는 현금 카드 현금 납부계약과 상이 하오니 이점 유의사항이 바랍니다.

※ 잔소납입에 따른 본상배상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한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계약금, 중도금의 계약금 납부계약과 합당하지 아니하여 불분명하게 계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납입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 외한 대변인명단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계약금 또는 잔금으로 지정된 납부계약에 시점 예금금인 계좌로 지정된 납부금 및 납부계약에 대하여 별도로 안내된 계약금에 대한 계약금 납입을 지시합니다.

구분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계약시	입주시
84A	20,000,000	2,000,000	18,000,000
84B	20,000,000	2,000,000	18,000,000
84C	20,000,000	2,000,000	18,000,000
84D	20,000,000	2,000,000	18,000,000
84E	20,000,000	2,000,000	18,000,000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발코니 확장대금	우리은행	1005-904-824604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소급만을 인정하며, 견본주책에서 일체의 현금/소수표를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투동장 입금 시에는 동 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수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투동장 입금 시 예시: 1011 10010 계약자 성명들 / 1011200 계약자 / "1010200금동들"

※ 다만 입금의 계약자는 반드시 계약자 및 상이하거나 불분명한 경우는 계약이 불가 및 계약이 무효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문제에 대하여 사법 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분	내용																				
공급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1호 및 제80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5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th>처리방법</th></tr> </thead> <tbody> <tr> <td>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td><td>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td></tr> <tr> <td>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td><td>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td></tr> <tr> <td>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td><td>※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td></tr> <tr> <td>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td><td>모두 부적격 처리</td></tr> </tbody> </table>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로 시·도·소속을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이와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해제 우려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은 주민등록번호 세대원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필요로 하는 특별공급 청약이 불가합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는 "1. 공통 유의사항" p.2 참조) - 기간주전 / 다자녀가구 / 신모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모부부양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간주전(청양면,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다세대주택 부지제공)는 청약통장 불필요) / 다자녀가구 / 신모부부 특별공급																					
청양통장 자격요건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금중 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노모부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금중 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청양통장 자격요건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th>특설시 및 부산광역시</th><th>그 밖의 광역시</th><th>특설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th></tr> </thead> <tbody> <tr> <td>전용면적 85㎡ 이하</td><td>300만원</td><td>250만원</td><td>200만원</td></tr> <tr> <td>전용면적 102㎡ 이하</td><td>600만원</td><td>400만원</td><td>300만원</td></tr> <tr> <td>전용면적 135㎡ 이하</td><td>1,000만원</td><td>700만원</td><td>400만원</td></tr> <tr> <td>모든면적</td><td>1,500만원</td><td>1,000만원</td><td>500만원</td></tr> </tbody> </table>	구분	특설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설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구분	특설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설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구분	내용
기관추천 특별공급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한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은 신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단,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다자녀 특별공급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서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가능함 ■ 단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임양자도 포함)이 있는 분 - 자녀는 민생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다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신원부부 특별공급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서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합산)인 분 ■ 「신원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서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단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한 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양'의 의미는 같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생애최초 특별공급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서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함 ※ (예외) 2024.03.25. 시행령「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혼인 전 처분한 이익은 배제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분 -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임양자도 포함,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인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 - 나. 1인 가구(혼인 중이나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 * 1인 가구는 청약제외안 신청가능하며, '단독세대'와 '단독세대가 아닌 분'으로 구분됨 * '단독세대'란, 단독세대주이거나, 동거인이나 영자세대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분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단독세대 신청자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신청가능함 * '단독세대가 아닌 분'이란, 직계존속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함 ■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안 분 * 과거 1년 내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분을 포함 **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금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구분	내용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영세자매부양) ■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1순위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일정금액의 예치금액 이상인 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영역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청약통장 자격요건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th>특정 및 부산광역시</th><th>그 밖의 광역시</th><th>특정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th></tr> </thead> <tbody> <tr> <td>전용면적 85㎡ 이하</td><td>300만원</td><td>250만원</td><td>200만원</td></tr> <tr> <td>전용면적 102㎡ 이하</td><td>600만원</td><td>400만원</td><td>300만원</td></tr> <tr> <td>전용면적 135㎡ 이하</td><td>1,000만원</td><td>700만원</td><td>400만원</td></tr> <tr> <td>모든면적</td><td>1,500만원</td><td>1,000만원</td><td>500만원</td></tr> </tbody> </table>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영역만 청약가능함	구분	특정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정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구분	특정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정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제 01292025-104-0001400 호	이천이백팔십구억일천사백십만원정 ₩ 228,914,700,000만정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로부터 건물소유권보존종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중통제 진보에 대한 통발사용검사 포함)까지

구분	건축감리	전기감리	소방정보통신감리
회사명	주식회사 예코건축사사무소	주식회사 신와에프이씨	주식회사 신와에프이씨
금액	3,100,000,000원	600,000,000원	1,200,000,000원
사업자등록번호	214-88-54874	107-81-49604	107-81-49604

구분	시행사	시공사	자금관리 대리사무
상 호	주회사 마주	메이치디씨엔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
법인등록번호	110111-0425606	110111-6740008	110111-2003236
주 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351(서초동)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233 55, 9층(한강로3가)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1, 13층(역삼동)

- **건본주책 주소** :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화동 207-10번지
 ■ **현장위치** :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동 506-1
 ■ **운영시간** : 오전 10:00 ~ 오후 17:00
 ■ **분양문의** : 1551-5061
 ■ **홈페이지** : <https://www.sangbong-ipark.com>

-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분양계약의 일부로 구성되어, 청약자는 최초 본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청약 및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의에 따라서는 청약 의무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및 청약계약에 있는 입주자에게 부담된다.
-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관한 민 및 인쇄 과정에서 생じた 사항이 있을 수 있으며, 공급(분양)계약서와 차이가 발생할 경우 공급(분양)계약서 내용이 우선시 됨을 안내하고자 함으로 입주자가 바랍니다.
- ※ 본 모집공고에 포함된 분양계약서의 기재사항은 모든 미지 제 사항이 있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계약 및 인쇄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의사내용에 대하여는 기본적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제사항은 포함되지 않으며 시 관계법령에 우선합니다.)